

제 12 장 전자상거래

제 12.1 조 목적과 원칙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12.2 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할 수 없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제품에 대해 내국 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2.3 조 온라인 개인 자료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자료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 및 표준을 고려한다.

제 12.4 조 종이없는 무역 행정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2.5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오도하는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2.6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특히 다음을 다룰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 서명 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 서비스의 원활화
 - 나. 개인 자료의 보호
 - 다.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
 -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의 취급
 - 마. 전자상거래의 보안
 - 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 사.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소 및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협력한다.
3.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러한 협의체의 틀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제 12.7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 1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개인 자료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인의 동의 없이 또는 수령인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되는 음성 또는 팩스 서신을 포함한 전자 서신을 말한다.